

주요국의 공정거래제도 운영

본 협회 조사부

미국

뉴욕 주 등, 대형 레코드 회사 및 소매업자의 CD 가격 인상 카르텔 제소

Eliot Spitzer 뉴욕 주 법무장관은 미국 대형 레코드회사 5개 사 및 소매업자 수개 사가 전국적으로 CD 가격을 구속하기 위해 공모하였다 하여 8월 8일 동사를 뉴욕 주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가격구속은 소비자에게 수억 달러의 손해를 준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뉴욕 주는 플로리다 주와 더불어 1995년부터 주 및 연방 독점금지법에 위반하여 CD의 가격을 인상하는 일련의 공모를 행하였다고 제소를 한 30개 주 및 자치영역의 리더이다.

Spitzer 장관은 “레코드회사와 소매업자에 의한 이러한 위법행위는 국민의 귀를 위한 음악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러한 공모 때문에 수천만의 소비자가 산타나, 휘트니 휴스턴, 마

돈나, 에릭 그랩톤과 같은 예술인의 CD를 구입하기 위하여 높은 가격을 지불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이 소송은 피고인인 캐피탈레코드, 소니뮤직, BMG뮤직, 유니버설뮤직, 및 워너뮤직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별개의 심사를 병행하고 있는 연방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손해액이 4억 8,000만 달러 이상에 달한다고 추계하고 있다. 각 주는 현재 청구할 손해액을 산정중에 있다.

제소된 소매업자는 섬 굿데이, 뮤직랜드라는 상호로 점포를 경영하고 있는 뮤직랜드 및 캠明媚, 뮤직&무비즈, 폴라넷뮤직, 레코드타운, 타워레코드의 상호를 가진 토란스 월드이다.

작년 CD의 도매 매출액은 전국 합계 약 140억 달러 이상에 달하였다.

소장에 따르면 1990년 초기에 써 키드-시티, 타겟트, 월마트, K마트, 베스트바이와 같은 업매업자 때문에 기존 소매업자도 CD 가격을 인하하였다. 경쟁의 격화에 의해 CD의 평균 가격은 15달러에서 10달러로 급격히 하락하였다. 시장 점유율에 대한 이 새로운 위협의 결과, 기존 소매업자는 레코드회사에 전국의 CD 소매가격에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협정을 체결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레코드회사는 이후 최저가격을 하회하여 소비자에

게 CD를 판매한 소매점과 소매 체인에 무거운 금전적 패널티를 과한 것으로 보인다.

Spitzer 장관은 “우리 경제는 공정하고 자유스런 경쟁의 개념아래에 성립되어 있다. 본 건과 같은 형태의 가격구속을 행하는 위법한 활동이 있다면 소비자는 항상 패자가 된다”라고 언급하였다.

Spitzer 장관은 뉴욕 주가 받은 손해액은 학교에서 음악교육 프로그램 설치 및 기타 동일한 활동 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소송은 맨하튼의 연방지방법원에 제소되었다. 뉴욕 주와 플로리다 주에 이어 애리조나,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캔자스, 메릴랜드, 미시간, 미시시피, 미조리, 네바다,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북마리아나제도, 펜실베니아, 폴엘드리코, 로드아일랜드, 텍사스, 유타, 워싱턴, 웨스트버지니아 및 원스콘시의 각 주 및 자치령 정부도 소송에 가담하였다.

소송은 Harry First의 지휘아래, 법무부 반트리스트국 소속의 법무장관보인 Richard Schwartz, Linda Gargiulo 및 Emily Granrud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 2000. 8. 8. 뉴욕 주 법무부 발표

Deutsche Telekom 사, 미 법무부로부터 기업결합 인가받아

이동전화사업자인 VoiceStream Wireless Corp.을 인수하려는 Deutsche Telekom 사의 제안이 미국 규제당국의 인가를 얻었다고 유럽 최대의 전화회사인 동 기업이 9월 7일 밝혔다. 그러나 설립된 지 1년 된 워싱턴 주 Bellevue 소재의 VoiceStream 사에 대한 Deutsche Telekom 사의 460억 달러 규모의 인수시도는 여전히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및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사에 직면해 있다.

당해 독일 통신회사는 미국 법무부가 당해 기업결합 제안에 대해 반트러스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심사 기간의 경과로 당해 기업결합을 자동적으로 인가하였다고 하였다. VoiceStream 사의 주주들도 당해 기업결합에 대해 투표하여야 하는데, 이는 지난 7월 공표되었다.

Deutsche Telekom 사는 성장하고 있는 미국 이동전화 시장의 진출을 노리고 VoiceStream 사 인수를 제안하였으나, 당해 제안은 정치적 반대의 벽에 부딪쳤었다. 워싱턴에서는 30명의 상원의원들이 FCC에 대해 외국 기업의 미국 통신회사 취득이 갖는 국가안보적 문제를 고려하도록 촉구하였다. 더욱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Ernest Hollings 상원의원은

외국정부가 25% 이상의 지분을 갖는 외국 기업이 미국 통신사업부문을 인수하는 것을 금하는 입법안을 제출하였다.

FCC 위원장인 William Kennard는 당해 기업결합 시도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독일정부가 58%의 지분을 갖고 있는 Deutsche Telekom 사는 Voice Stream 사와의 기업결합은 결합된 기업에 대한 독일 정부의 지분을 45%로 감소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우려가 완화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 2000. 9. 7, The New York Times

2개 제약회사, 경쟁 억압 혐의로 FTC 조사 받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9월 6일, Bristol-Myers Squibb 사와 American Bioscience 사로 불리는 캘리포니아 주의 소규모 회사가 Bristol 사의 항암제인 택솔과 성분은 같으나 가격은 저렴한 약품이 출시되지 못하도록 위법하게 공모하였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하였다.

FTC는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에 접수된 소송장에서 Bristol-Myers 사와 American Bioscience 사간의 합의 내용은 이들 두 기업이 택솔의 유사약품을 약국에 출시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잠재적

으로 소비자를 해하는지의 문제를 포함하여 “잠재적인 경쟁상 문제들을 야기한다”고 하였다. 연방정부가 발견한 약품인 택솔은 작년에 Bristol-Myers 사에 15억 달러의 매출액을 안겨 주었다.

유사약품 제조회사들은 보통 유사약품이 출시된 후 처음 6개월 동안은 유명상표 약품 가격보다 30% 싸게 가격을 책정한다. 6개월이 지나면 이 가격은 유명상표 약품 제조업체들이 매기는 가격의 50% 이하로 떨어지기도 한다. 하원 예산청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유사약품은 1년에 소비자들에게 수십 억 달러의 절약을 가져다 준다고 한다.

식품의약청(FDA)은 마이애미에 소재한 유사약품 제조업체인 Ivax 사에 대해 택솔의 유사약품 판매를 지난 달 잠정적으로 승인하였다. 그러나 FDA가 Ivax 사의 약품은 택솔만큼 효과적이고 안전하다고 하였지만, 규제당국은 Bristol-Myers 사와 American Bioscience 사간의 복잡한 법적 협정 때문에 Ivax 사로 하여금 당해 약품을 판매하도록 할 수는 없었다고 하였다. 협정에 따라 Bristol-Myers 사는 FDA가 유지하고 있으며 ‘오렌지 북(orange book)’로 알려져 있는 출판물에 택솔과 관계되어 American Bioscience 사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를 등재하여 놓았었다.

Bristol-Myers 사의 대변인은 “조사 사실을 방금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논평한다는 것은 부적절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American

Bioscience 사는 당해 조사에 대한 논평을 구하는 거듭된 연락에도 응답이 없었다.

FTC의 이번 조사는 유명상표 제약 회사들이 저가의 유사약품의 판매를 위법하게 저지하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다 광범한 노력의 일환이다.

Bristol-Myers 사와 American Bioscience 사는 로스앤젤레스 연방 지방법원의 William Matthew Byrne Jr. 판사에 대하여 자신들의 협정을 승인하여 주고 Bristol-Myers 사가 American Bioscience 사의 특허를 FDA에 등재된 상태로 놓도록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연방법에 따르면 이러한 특허의 등재로 인해 Ivax 사는 택솔의 유사약품 판매가 30개월까지 금지될 수도 있다. 이러한 지연은 Bristol-Myers 사로 하여금 택솔에 대한 독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러한 조치는 매출액 20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다.

지난 달, Ivax 사가 Bristol-Myers 사와 American Bioscience 사간의 합의를 알게 되었을 때, 기업 임원들은 이것이 Ivax 사에 대하여 저가의 유사약품 판매를 저지하려는 “또다른 구도”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Bristol-Myers 사와 American Bioscience 사 모두 Ivax 사의 비난을 일축하였다. American Bioscience 사는 동기업은 미국 특허청이 허여한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하였다. 당해 특허의 보호를 받는 약

품의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 American Bioscience 사는 Bristol-Myers 사가 당해 특허를 ‘오렌지서’에 등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American Bioscience 사는 Bristol 사에 대하여 FDA에 당해 특허를 등재할 것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Byrne 판사는 지난 달 Bristol-Myers 사가 이를 행하도록 명하는 일시적 제한명령을 발하였다.

9월 5일, Byrne 판사는 자신이 이 문제에 대해 관할권이 없었기 때문에 당해 제한명령을 발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Bristol-Myers 사가 당해 특허를 오렌지서에서 삭제하지는 명백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된다면 Ivax 사는 저가의 유사약품을 자유로이 판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2000. 9. 7, The New York Times

미 FTC, 자동차 업체들의 부품 공급 사이트 개설 인가

미국 연방 반트러스트당국은 9월 12일, 5대 주요 자동차업체들 - 3대 미국업체를 포함하여 - 이 단일의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부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될 온라인 합작투자사업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기업 대 기업 웹사이트인 Covisint의 개설을 인가하였는데, 제안업체들은 이 웹사이트가 포드 사,

GM 사 및 다이얼러크라이슬러 사의 3,000억 달러 규모인 연간 부품 구매를 원활히 해 줄 것이라고 하였다.

제안된 사이트에는 자동차업체들이 공급업체로부터 찾는 부품을 목록으로 작성하여 등재할 것이 기대되며, 부품공급업체들은 계약 확보를 위해 입찰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 절차는 통상적으로 역경매로 호칭된다. 더욱 이 연간 5,000억 달러를 지출하는 자동차엔진 공급업체들은 엔진부품에서부터 사무비품까지 모든 것을 이 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다고 제안업체들은 말하였다.

일본의 닛산자동차 사와 프랑스의 르노 사 또한 당해 온라인시장의 당사자이며, 정보기술기업인 Commerce One Inc. 및 오라클 사 등 2개 사도 이에 참여하고 있다. 도요타자동차 사는 당해 합작투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Covisint 관계자들은 말하였다.

미국 자동차업체들은 FTC가 장고 끝에 Covisint에 유리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하였는데, 이들은 이 웹사이트가 조달절차를 원활히 함으로써 효율을 증대시키고 상당한 비용절약을 낼 것이라고 하였다.

포드 사의 전자상거래부문 팀장인 Brian Kelley는 당해 웹사이트는 온라인 가격조회 및 제품디자인 협력을 손쉽게 함으로써 “우리의 공급 네트워크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하였다.

FTC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6개월 간의 조사는 마무리되었는데, 이 조사에서 FTC는 당해 웹사이트로 인해

대형 자동차업체들이 공급업체들에 대하여 제품가격을 낮게 유지하도록 강제하기로 담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동 위원회는 4대 0의 표결로 당해 웹사이트 개설을 찬성하였는데, 그러나 동 위원회는 어떠한 반경쟁적 조작도 경계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추가적 조치를 취할 권한을 유보한다”라고 하였다. Thomas B. Leary 위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FTC는 성명을 통하여 “이 계획은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설립업체들이 자동차 시장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위원회는 Covisint 투자사업의 시행으로 경쟁상 우려를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자동차산업 구매부분 전문가인 Thomas T. Stallkamp는 이 결정이 당해 웹사이트의 개설을 위한 “전형적인 조치”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Covisint가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덧붙였다.

크라이슬러 사의 사장이었던 Stallkamp는 Covisint의 개설업체들은 이 사이트가 “진정으로 중립적”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여야만 이 사이트가 공급업체들에게 인정되고, 주요 구매업체들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졌다고 보이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개설업체들로 하여금 공급업체들에게 당해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일정 지분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자동차업체들은 현재까지 이러한 방

법을 배제하고 있으며, 수십 개의 공급업체들에 대하여 이들의 사이트를 당해 포털의 광대한 수입원과 연계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을 네트워크에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주식을 공유함으로써 자동차업체들은 이들이 Covisint를 “공급업체들에 대한 의사소통의 도구라기보다는 공급업체에 대항할 비용절감 도구”로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Stallkamp는 말하였다. 그는 현재 기업체들의 공학자 고용을 돋는 미시건 주의 회사인 MSX International 사의 최고경영자이다.

Covisint의 임원들은 아직 최고경영자를 선임하지 않았으며, 당해 포털의 데이터 - 구매정보에 대한 잠재적으로 가치있는 자료 - 의 소유주도 정하지 않았고, 공급업체들의 전속적 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고안하지도 않았다.

당해 온라인시장은 또한 독일 반트러스트 규제당국의 인가도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결정은 곧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Covisint의 임시 공동 최고경영자인 Alice Miles는 이 전자시장이 최종 인가가 난 후 1개월 내에 가동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기자들을 상대로 한 발언을 통해, 포드 사 직원이었던 Miles는 Covisint가 적어도 2분기 동안 영업활동을 한 후 내년에 기업공개를 추구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Miles는 “Covisint는 전세계적인 주도적 e-비즈니스 거래소를 창설할 것이다. FTC의 검토 종료는 변혁적

인 기업 대 기업 거래소를 설립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대한 중대한 지표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밝혔다.

Covisint는 FTC가 심사한 최초의 기업 대 기업 투자사업이다. 기업 대 기업 전자시장은 “상당한 비용 절감이 달성될 수 있고 영업 과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조직될 수 있으며 경쟁이 제고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전도유망하다”라고 FTC 위원장인 Robert Pitofsky는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시장들이 “경쟁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조직되고 시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FTC가 추가적인 투자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 2000. 9. 12, The New York Times

미국 4개 옵션거래소, 가격고정 사건에서 화해

미국의 주요 옵션거래소들이 9월 11일,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 금융시장에서 제기된 두번째 가격담합 사건에서, 연방정부의 가격고정 주장에 관하여 화해하였다.

그러나 옵션 시장이 이제는 상호간에 경쟁하고 있으므로 - 1년 전에 발생한 급작스런 산업계의 변화인데 - 화해에 포함된 벌칙은 산업계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데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4개 옵션거래소들이 상호간에 대부분의 우량주 주식에 대한 배타

적 옵션행사권을 부여한 위법한 합의를 수년간 유지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경쟁을 억압하고 투자자들에게 제시되는 가격을 인상시켰다.

거의 2년이 걸린 이번 조사의 4개 대상인 미국 증권거래소(Amex), 시카고 옵션거래소(CBOE), 퍼시픽 거래소 및 필라델피아 증권거래소는 최근 몇 년 동안 거래량이 폭등한 옵션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11일의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이중 조치는 지난 4년 동안 주요 증권시장들이 제도화된 가격고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연방정부가 기소를 행한 두번째 경우가 된다.

1996년 나스닥 시장의 대규모 가격고정 사건과 마찬가지로, 옵션거래소들의 합의는 이에 대항하고자 하는 자들에 대한 협박, 위협 및 괴롭힘과 함께 시행되었다고 조사관들은 밝혔다.

이들 거래소의 자율규제 부서들이 이러한 남용을 단속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이들의 집행이 미약하였으며 이의제기를 제때 처리하지 않았다고 당국은 말하였다. 법무부는 또한 이들 거래소가 전체 컴퓨터 용량의 증대를 제한하기 위해 공동으로 행위하고, 이로써 여러 시장에서 옵션계약을 주문할 능력을 감소시켰다고 주장하였다.

풋옵션과 콜옵션 계약은 투자자에게 일정한 수의 기본 주식을 정해진 일자에 특정 가격으로 매수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들 계약은 주식, 산업계 또는 전체 시장의 방향에 따라 주문을 넘으로써 점차

인기있는 방식이 되었다.

거래소들의 경쟁 자체 합의는 적어도 1994년 후반기부터 1999년 8월까지 지속되었는데, 1999년 8월 CBOE, 그리고 Amex가 그때까지 필라델피아 증권거래소의 탐나는 “재산”이었으며 거래량이 많았던 델 컴퓨터 사의 옵션계약을 상장하면서 당해 담합은 몇 시간 내에 와해되었다. 필라델피아 증권거래소는 CBOE와 Amex의 가장 인기있는 옵션계약 몇몇을 상장함으로써 즉각 보복하였으며, 다음이 고조되면서 퍼시픽 거래소도 이에 관련되었다.

법무부는 11일, 이들 거래소를 상대로 반트러스트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동시에 이들의 장래의 반경쟁적 거래를 금하고 시장을 투자자들에게 더욱 공정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이들이 취해야 할 조치를 개관하는 화해안을 공표하였다.

SEC는 이들 거래소를 견책하고 감시 및 집행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2년간 전체적으로 7,700만 달러를 지출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러한 지출은 이들 거래소의 자율규제 지출의 연간 50% 이상의 인상을 의미한다고 당국은 밝혔다. 또한 같은 날짜에 Amex와 CBOE, 그리고 다수의 옵션 시장조성자들은 이들의 경쟁 자체 합의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 투자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 대하여

7,670만 달러 규모의 잠정적 화해에 도달하였다. 당해 화해안에 따르면 CBOE는 1,600만 달러를, Amex는 1,400만 달러를, 그리고 여타 시장조성자들이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기로

되어 있다고 당해 사건에 관련된 한 변호사는 밝혔다. 뉴욕증권거래소 및 소수의 여타 옵션시장들은 화해를 거부하여 피고로 남아 있다고 이 변호사는 말하였다. 퍼시픽 거래소 및 필라델피아 증권거래소는 지난 5월에 각각 450만 달러와 28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별도로 화해하였다.

이번 연방 사건에서는 어떤 개인도 문책당하지 않았고, 벌금도 부과되지 않았으며 형사기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거래소들은 위법사실을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채 정부의 조치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과거 규제당국에 몸 담았으며 때때로 산업계 비평가로 활동하는 뉴욕 주 증권 전문변호사인 Bill Singer는 당해 조치가 지나치게 가벼운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SEC 집행책임자인 Richard H. Walker는 동 위원회의 접근방법을 응호하였는데, 당해 배타적 옵션행사 관련 합의는 “집단적인, 그리고 제도적인 실패”였다고 하였다. Walker는 실제적인 문제로서 증권거래소 임원들의 담합 사실을 입증하기란 극히 어려우며, 더욱이 경쟁적인 시스템을 향한 거래소들을 번거롭게 할 수 있는 시장조성자 내지 중개업자와 같은 “줄개들을 잡는 것”은 유용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CBOE의 최고경영자인 William Brodsky는 CBOE는 당해 집행조치를 환영하며, 이는 “모든 거래소들이 보다 평등한 규제의 기초 위에 서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노트르담 대학의 재무관리 교수인 Robert H. Battalio는 투자자들이 1999년 배타적 옵션 행사 합의의 봉괴로부터 얼마나 이득을 얻었는지를 계량화하기란 어렵다고 하였다. 그는 투자자들이 이익을 얻었다는 최상의 증거는 1999년 8월 이후 거래소들간에 시장점유율의 재편성이 있었다는 것이라며, 옵션 거래자들은 더 나은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한 거래소에서 다른 거래소로 옮기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 2000. 9. 12, Los Angeles Times

미 법무부, 토마토 관련 반트러스트 소송 제기

미국 법무부는 9월 15일 반트러스트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무부는 이것이 소비자들에게 덩굴에 붙어 익는 토마토에 대한 겨울철 선택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법무부 반트러스트국은 장기간 보존 가능한 토마토 종자의 개발과 관련하여 경쟁을 감소시켰다고 주장되는 사적 합의를 번복시키기 위해 애리조나 주 투선 연방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장기간 보존 가능한 토마토는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멕시코에서 재배되는데, 덩굴에 붙은 상태로 익어서 부패되기 이전에 판매되도록 원거리 지역으로 연중 언제든지 선적가능하다.

현재 미국 상점에서 겨울철에 판매되는 신선한 토마토들의 대다수는 남부 온대지역에서 덜 익은 상태로 수확되어 빨갛게 익을 때까지 인공숙성된다. 미국 소비자들은 신선한 토마토에 연간 40억 달러를 지출한다.

당해 소송은 LSL Biotechnologies Inc., Seminis Vegetable Seeds Inc. 및 이들의 합작투자사업인 LSL Plant Science사를 상대로 제기되었다. 이번 소송은 경쟁업체인 Hazera Quality Seeds Inc.가 미국 내에서 장기간 보존 가능한 토마토 종자를 개발 및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합의를 무효로 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LSL 사와 Hazera 사가 이러한 토마토 종자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였다. 당해 계약은 만료되었지만 Hazera 사가 농민들이 덩굴에 붙은 상태로 익는 토마토를 부패 이전에 장거리수송을 거쳐 시장에 내놓도록 할 수 있는 종자 개발을 금지하는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다.

“혁신을 위한 경쟁은 기업들에게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더 유리한 가격으로 더 높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도록 자극한다”라고 법무부 반트러스트국장인 Joel Klein은 말하였다. “이번 합의로 인해 미국 농민 및 소비자들은 그러한 경쟁의 이익 전부를 빼앗기고 있다.”

LSL 사와 Seminis 사는 겨울철 북미 지역에서 신선한 토마토를 재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종자의 지배적인 판매업체들이다. 법무부는 유럽과 중동 최대의 종자 생산 업체인 Hazera 사는 피고들과 경쟁관계에

있으면서 미국 농민들에게 제공할 장기간 보존 가능한 토마토 종자를 개발하고 출시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단지 몇몇 회사 중 하나라고 하였다.

LSL Biotechnologies 사와 LSL Plant Science 사는 애리조나 주 투선에 본사를 두고 있다. Seminis 사는 채소 종자에 대한 세계 최대의 개발·생산 및 마케팅업체이다. 동 업체는 캘리포니아 주 Saticoy에 본사가 소재하고 있으며 멕시코에 기반을 둔 대기업인 Savia 사가 지배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이기도 하다.

■ 2000. 9. 15, The New York Times

유럽

이탈리아, 보험회사가 협조적 협정, 7,000억 리라의 제재금 부과

2000년 7월 28일 이탈리아 경쟁 당국은 자동차보험시장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자동차보험회사가 2개의 개별적인 반경쟁적 행위를 행하였다 는 것에 대해 책임질 것을 결정하였다. 이 중대한 위반에 대해 당국은 합계 약 7,000억 리라의 제재금을 부과하였다.

심사는 약 10개월 전 세관·물품세

경찰에 의해 주요한 자동차보험회사 15개 사가 동일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수집에 착수하였다. 동 증거에 의하면 심사를 받은 모든 회사는 화재도난보험서비스를 제3자책임보험으로부터 분리하여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이후의 심사에서 보험회사가 제3의 회사를 통해 막대한 양의 전략상 중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이 때문에 당국은 당해 정보교환이 반경쟁적 협정을 구성하였는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진행중인 심사기간을 연장하는 동시에 수많은 다른 보험회사까지로 심사대상을 확대하였다.

심사는 이를 위해 2개의 상이한 유형의 반경쟁적 협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제3자책임보험과 분리하여 화재도난보험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은 것에 관해 당국은 이 특정시장에 있어서 모든 회사가 보조를 맞추고 있는 이유가 보험회사가 관련 내의 보험을 보험계약대상으로 하는 것을 보험계약자에게 강제하는 내용의 협조적 협정을 맺고 있는 것에 의한 것도 있으며, 이 결과 경쟁이 왜곡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당국은 자동차보험분야에 있어서 이러한 다수의 보험회사 약 40개 사에서 행해진 정보교환은 특히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당해 협정은 경쟁하는 보험회사간의 복잡하고 대단히 조직적인 협조적 관행의 모습을 가지고, 이탈리아 경쟁법(법률 제287/90 「경쟁 및 시장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제3자책임보험 및 기존 유

형의 자동차보험의 보험료에 대해 비밀을 요하는 정보를 업계 일반에 광범위하고 오랫동안 여러 차례 교환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각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적용하는 영업상 및 계약상의 조건에 관계하는 정보교환도 있으며, 이의 중요성, 교환된 정보의 상세함과 빈도가 높다는 점에서 또한 전 자동차보험회사의 약 80%에 이르는 막대한 수의 보험회사가 당해 협정에 참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경쟁법 위반사인이다. 정보교환 루트는 제3의 회사설립을 통해 보험회사 특허 당해 목적을 위해 설립된 특별 감시조직의 회원제도에 의해 제도화된 것으로서 경쟁적인 시장에 놓여 있는 경우의 상황보다도 높은 수준에서 보험료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이 협정은 당해 보험분야에 있어 지극히 민감한 시기였던 자유화(1993년) 직전에 맺어져, 기업이 적절한 경쟁적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새롭게 마련한 기회를 만드는 것이 기대되어진 시기에 발생하였다.

■ 2000. 7. 31, 이탈리아 경쟁·시장보호위원회 발표

EC, 마이크로소프트 사에 의한 소프트웨어 정보의 차별적인 제공 및 제공 거절에 대해 정식심사절차 개시

유럽위원회는 경쟁정책담당위원인 마리오 몬테의 주도에 의해, 마이크로

소프트 사가 퍼스널 컴퓨터(PC)의 운영 시스템(OS)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서버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이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하여 이의고지서를 발부하였다. 유럽위원회의 행동은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유럽공동체의 경쟁법에 위반하여 윈도우즈 운영 시스템의 필수불가결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차별적인 라이센스를 행하고 또한 라이센스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여 미국의 소프트웨어회사인 선 마이크로시스템 사가 제기한 신고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사는 PC의 운영 시스템(OS) 시장에 있어서 95%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실제로 명백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PC는 서버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 호환성, 즉 PC가 서버와 연결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는 네트워크컴퓨팅의 기본이다. 호환성은 PC 및 서버상에서 작동하는 OS가 링크 또는 이른바 interface를 통하여 서로 통신하는 경우에만 기능을 발휘한다.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경쟁자가 PC시장에서 지배적인 윈도우즈 소프트웨어와 통신할 수 있는 서버/OS를 개발하기 위하여는 인터페이스 정보, 기술정보, 그리고 윈도우즈 PC/OS의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의 일부까지도 공개되어야 한다. 호환성이 있는 소프트웨어는 없으며 또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시장에 있어서의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압도적 우위의 결과로서, 윈도우즈 OS 상에서 작동하는 컴퓨터가 완전한 호

환성을 갖게 된다면 사실상 윈도우즈 서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이 현상은 「서버를 끌어당기는 고객(PC)」으로 일컬고 있다.

선 마이크로시스템 사는 1998년 12월의 신고 및 그 후의 자료제출에 있어서 PC/OS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거의 독점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사는 동사 이외의 서버 소프트웨어에 의한 호환성을 가능케 하기 위해 인터페이스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부담지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의무 대상에는 1998년 10월에 인터페이스 정보 공개를 요구한 선 마이크로시스템 사의 요구가 거절 된 당시, 마이크로소프트 사에 의해 공급되고 있던 OS, 즉 윈도우즈 95·98, NT4.0 및 일체의 후속 새로운 버전을 포함한다. 선 마이크로시스템 사는 2000년 2월 17일의 윈도우즈 2000 발매는 중요한 경쟁업자 모두를 서버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축출하기 위해 인터페이스 정보 제공거절의 효과를 강화하게 하기 위한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전략의 최후 단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선 마이크로시스템 사는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이른바 「적 - 동료」전략에 따른 경쟁업자를 분류함으로써 차별적인 라이센스 방침을 채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이 PC/OS에 관한 충분한 인터페이스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 제공을 받았다. 유럽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일부

의 경쟁업자에게 불공평하고 차별적인 기준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동사는 선 마이크로시스템 사와 같은 경쟁업자에게는 인터페이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거절하였다.

이 사건의 해결은 IT(information technology) 및 전자상거래를 위해 필요한 글로벌 마케팅의 발전에 있어서 전략상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서버/OS시장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마리오 몬테는 “유럽위원회는 소비자 및 산업에 있어서 매우 건설적인 발전이 이상 출처를 가릴 것 없이 컴퓨터 기술에 있어서 모든 진정한 혁신 및 진보를 환영한다. 저작권 및 특허권의 효과적 보호는 기술의 진보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반경쟁적 수단에 의해 또한 저작권 보호의 핵심(구실)로 시방지배력을 행사하여 현재의 지배력을 근접시장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용인되지 않는다. 유럽공동체에서 사업을 행하는 모든 기업은 이 독점금지법에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러한 기업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을 행할 결의가 되어 있다”고 언급하였다.

■ 2000. 8. 3. 유럽위원회 발표

유럽위원회는 수많은 신고 및 유럽 위원회가 본 건의 문제에 대하여 잘못된 대응을 했다고 하는 유럽제일심법원의 판결을 받고, 독일우편 사업자인 독일 Post AG에 대해 지배적 지위의 남용하였다 하여 정식 심사절차를 개시하였다. 심사절차는 제일 먼저 독일 우체국(Post)의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소포배달요금의 설정에 관해 행해졌다. 유럽위원회에 의한 예비적 심사에 의하면 독일우체국은 대형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그들이 모든 소포를 독일우체국을 이용하여 송부할 것을 약속한 경우, 대폭적인 할인을 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독일우체국이 이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소포 배송 서비스 비용을 할인하여 제공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소포 배송 서비스를 영위하는 민간기업은 독일에서는 기반을 구축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있다. 심사절차에서는 또한 독일우체국이 독점권하에서 설정하고 있는 보통우편요금도 문제시하고 있다. 현재 유럽위원회는 독일우체국에 대해 서비스의 질과 인구밀도를 고려하여 왜 독일의 소비자가 유럽에서 최고로 높은 우편요금을 지불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유나이티드·페셀·서비스(UPS) 및 BIEK이라는 명칭의 협회를 조직하고 있는 수많은 중소규모의 운송업자의 신고를 받아 업무용 소포서비스 심사를 1994년에 시작하였다. 신고인은 독일우체국이 비용을 하회하는 가격설정을 행하였고 이에 의해 민간의 경쟁자를 자유화되어진

EC, 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독일 우편 사업자 AG에 대해 정식심사절차 개시

업무용 소포서비스산업으로부터 몰아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후 UPS는 유럽제일심법원에 대해 유럽위원회가 자기들이 신고한 것에 대해 잘못된 대응을 하였다는 판결을 구하 여 제소하고, 1999년 9월 9일 유럽제일심법원은 유럽위원회가 독일우체국에 대해 심사절차를 개시하였지만 신고를 최종적으로 각하할 것인가와 아니할 것인가의 대응을 채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유럽위원회는 지난 4월 독일우체국이 대형 고객에 대해 특별히 대폭적인 할인서비스를 행하고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입수하였다. 또한 대형 통신판매업자가 이 모든 소포 혹은 최소한 상당비율을 독일우체국을 통하여 송부한 경우에 최고의 할인율을 향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보강적인 증거도 있었다. 이런 종류의 할인은 경쟁을 해치는 효과를 강하게 낳는다.

위원회의 심사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소포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민간업자가 독일에서는 기반을 구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였다.

독일우체국의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소포 배송 서비스에 관한 철저한 조사에 의해서도 동 사에 의한 당해 서비스는 다른 법인 고객에 대한 서비스에 비해 극히 높은 가격인 우편국창구인도의 서비스에 비해 당해 서비스에 드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독일우체국이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비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이것이 정식심사절차에 의해 확인된 경우 독일우체국의 행위는

EC조약 제82조의 지배적지위의 남용 행위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약탈적 가격설정에 해당하게 된다. 독일우체국의 할인제도는 또한 제82조에 위반하는 충성리베이트에 해당하게 된다.

독일에서는 소포배송서비스가 우체국의 독점사업은 아니다. UPS, Deutsche Paketdienst 및 German Parcel과 같은 민간 서비스 업자는 1976년부터 주로 「기업간 거래」 또는 「B2B」서비스분야에서 업무용 소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B2B분야에서 성공하고 있는 경쟁 업자도 통신판매분야에서의 소포서비스에서는 1개 사도 성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통신판매분야에 대한 심사가 계속 중이었던 금년 2월, 독일 우편서비스 이용자협회(DVPT)는, 보통 우편물의 우편요금이 독일우체국에 독점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이 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동 협회는 보통 우편의 우편요금은 실제로 제공된 서비스와 어떠한 합리적인 연관관계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유럽위원회는 질문서를 작성하여 독일우체국에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였다. 서비스의 질 및 인구밀도를 고려한 상세한 비교에 의해 독일의 소비자는 이제까지 유럽에서 제일 높은 우편요금을 지불하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 2000. 8. 8. 유럽위원회 발표

월마트 사, 독일 연방 카르텔청으로부터 가격인상 명령받아

독일 경쟁당국이 9월 8일, 세계 최대 소매업체인 월마트 사에 대하여 독일 하이퍼마켓에서 주요 제품의 가격을 인상할 것을 명령함으로써 동 기업의 유럽 사업확대 계획은 1주일 사이에 두번째 타격을 입었다. 이번 결정은 월마트 사가 손실을 보고 있는 독일 영업점들을 회생시키려 분투중이라는 조짐이 있는 가운데 유럽 사업부문 최고책임자인 Alan Leighton이 사임한 지 사흘만에 나온 것이다.

본에 소재한 연방카르텔청은 동 청이 월마트 사, 그리고 개인 소유의 할인소매업체인 Aldi-Nord 사와 Lidl 사가 일정 제품을 구매가격 이하로 판매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행은 소규모 가족본위의 상점들을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작년에 개정된 소매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 연방카르텔청장인 Ulf Boge는 이들 소매업체들에 대하여 5개 내지 10개 종류의 상품, 주로 우유, 버터나 살탕과 같은 기본제품의 가격을 즉각 인상하지 않으면 100만 마르크(35만 5,00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통지했음을 밝혔다.

연방카르텔청의 대변인은 이번 두 달간의 조사 - 월마트 사에 대한 이의 제기로 촉발된 - 결과는, 과거에 유사한 조사가 수행된 적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연방카르텔청이 비용 이하로의 판매의 증거를 처음으로 발견한 경우라고 하였다.

Concord Effekten 사의 분석가인 Joachim Bernsdorff는 연방카르텔청이 일정 상점의 가격정책을 측정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종종 이용하는 이른바 '핵심 제품'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월마트 사의 가치지향 이미지에 손상을 기한 것이라며, "그러나 소매업체들이 이번 결정을 준수하고 난 뒤 다른 제품에 대한 가격을 인하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실제 매출에 주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연방카르텔청의 또 다른 조사는 비용수준으로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때문에 몇 달이 걸릴 것이라고 하였다.

월마트 사의 독일 사업부문은 8일 연방카르텔청의 결정에 대해 논평을 거부하였으나, 동 업체는 권고내용에 합치하여 가격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동 성명에서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소비자들에게 최저가격으로 최상의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독일의 생활비를 낮추는 일에 전념할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 2000. 9. 8, Financial Times

스페인, 코카콜라 사에 대한 조사 개시

스페인 경제성은 코카콜라 사가 강력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왔다는 경쟁업체들의 주장에 따라 동 기업을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주요 일간지인 *El País*지는 반트러스트 당국이 코카콜라 사가 스페인에서 이용하는 3개 독립적 바틀링 업체들을 방문한 이후 당해 조사가 개시되었다고 하였다.

9월 20일의 방문은 펩시 스페인 법인과 스페인 음료회사인 La Casera 사가 이의신청을 접수시킨 뒤 이루어졌다.

스페인 법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펩시 사는 코카콜라 사가 "해당 부문의 독점적 지배를 획득할 목적으로" "부당한 마케팅 및 판매관행"을 행하였다고 비난하였다.

이번 조사는 코카콜라 사가 전세계에서 직면하고 있는 조사 중 가장 최근의 것인데, 이러한 조사의 대부분은 펩시 사의 이의제기에 의해 촉발되었다. 유럽연합은 이미 5개 여타 유럽 국가에서 코카콜라 사 및 동 기업의 바틀링 업체들의 마케팅 관행을 조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 2000. 9. 21, The New York Times

일본

공취위, 항공사진측량 담합의혹사건에서 추가 현장조사

건설성 및 농수성 등 국가기관 및 토후쿠(東北) 6개 현이 발주하는 토후쿠 지구에서의 항공사진측량업무의 입찰을 둘러싼 담합의혹사건에서, 공정취인위원회는 9월 12일, 도쿄증시 1부 상장기업인 국제항업(國際航業)(본사 도쿄) 및 파스코(본사 도쿄), 도쿄증시 2부 상장기업인 아시아 항측(航測)(본사 도쿄) 등의 지점과 영업소 등 수십여개소를 독점금지 법 위반(부당한 거래제한)의 혐의로 현장조사하였다. 공취위는 5월에도 똑같은 조사를 실시한 상태여서, 이번 현장조사는 지난 번 조사를 보충하는 추가적 조치로 보여진다.

관계자에 따르면 각 사는 항공기를 사용하여 조사대상물을 공중에서 촬영한다든지 사진을 기초로 원도를 작성한다든지 하는 항공사진측량업무에 대하여, 국가기관 및 각 자치단체가 지명경쟁입찰 등을 행하기 전에 회합을 갖고 그 자리에서 수주예정지를 결정한 후에 그 이외의 회사들은 수주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게 협력하도록 하여 왔다는 혐의가 있다.

이번의 현장조사에 대하여 국제항업, 파스코, 아시아 항측 각 회사는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 논평은 할

수 없다”는 등으로 말하고 있다.

■ 2000. 9. 13, 이사하신문

공취위, IT 분야의 독점금지정책에서 자침 설정

공정취인위원회는 9월 12일,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IT(정보기술) 분야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도에 독점금지법 및 경품표시법에 저촉되는 경우에 대한 운용 가이드라인을 각각 설정할 방침임을 명확히 하였다.

인터넷 세계에서는 유리한 기술이 시장에서 단숨에 독점적인 지위를 획득하기 쉽고, 기업간의 경쟁을 과도하게 저해하는 폐해도 지적되고 있다. 공취위에서는 경쟁정책면에서도 IT사업의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공취위가 책정을 예정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은 (1) 소프트웨어 관련 저작권과 사업모델 특허의 라이센스(지적재산사용권) 계약, (2) 전자상거래에 관한 광고·표시의 두 가지이다.

소프트웨어 관련 저작권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소프트웨어에 관한 저작권을 가진 기업이 PC제조업체 등에 저작권의 사용권을 허용할 때 우월적인 입장을 이용하여 다른 부품과의 연계판매를 강요하는 일 등도 보이므로, 이러한 사례를 독점법 등에 저촉되는 경우로 제시한다.

그 외에 IT를 사용한 사업기법에

부여되는 사업모델 특허에 관련하여 서도 구체적인 위반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특허를 가진 기업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특허를 부여한 기업에 대하여 제품의 판매수량 및 판매선 등을 제한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독점금지법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일본 내 사례에서는 표계산 소프트웨어인 「엑셀」의 저작권을 가진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일본법인이 PC제조업체들에 대하여 엑셀의 저작권 사용을 승인할 때 워드프로세서 소프트웨어인 「워드」의 사용을 강제하였다고 하여, 1998년 11월에 공취위가 마이크로소프트 일본법인에 배제권고를 낸 경우가 있다. PC의 보급이 진전되면 같은 형태의 문제가 늘어날 것이 예측되므로, 저작권 및 사업모델의 특허에 대한 거래규칙을 제시하게 되어 있다.

전자상거래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인터넷상의 과대광고 및 허위표시 등을 막기 위해 어떠한 광고 및 표시를 게재한 경우에 경품표시법에 저촉되는가를 열거하게 된다.

■ 2000. 9. 13, 요미우리신문